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73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예산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2,370억원

구 분		예 산
지원예산	생산자금	2,340억원
	시설자금	
		비태양광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2,370억원

주1) 지원예산액은 생산·설치·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 사업

### ① 농촌형 태양광

- ◇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② 영농형 태양광

- ◇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함

### ③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저수지 태양광)

- ◇ 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저수지 수면에 500kW미만의 수상 태양광설치하여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
- ◇ 조합원의 90%이상이 발전소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주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 주5) 태양광 설비는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가능
- 주6) 영농형태양광 해당 농작물

구분	농작물 (51종)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3)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봄무(고랭지무 포함), 봄배추(고랭지배추포함), 겨울무, 겨울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8)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 통계청 / 2017년 농작물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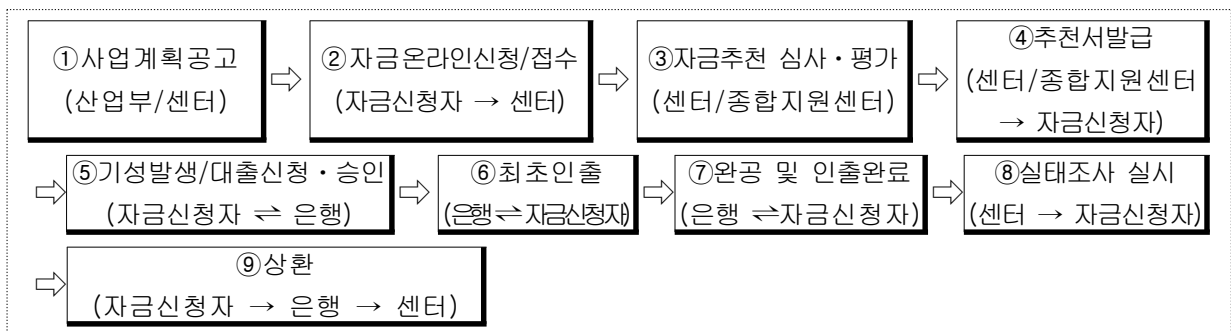
## □ 지원조건

### ○ 지원항목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및 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주1) 이자율 및 용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주4)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주5)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 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주6)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 □ 추천 및 용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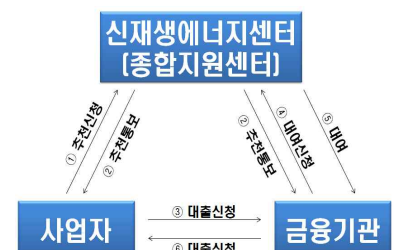


##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http://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 신청기간 : '19. 3. 6. ~ 6. 30.

\* 예산 소진 시 종료



## □ 자금신청 및 추천

- 평가점수 60점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자금 추천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태양광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기준으로 당해연도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됨(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 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21호)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은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임
-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의1내지2, 산업부 고시 제2018-130호)은 정책 금융지원과 별도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됨
-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 □ 설비 성능 등

-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 □ 자금신청 반려대상

-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및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단순하도급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은 예외)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 2019년도 주요 변경사항

### ◇ 용자신청 상시 접수

(기존) 2주 → (변경) '19. 3. 6. ~ 6. 30.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 태양광 공제·보험 증서 제출 요건 신설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한 공제·보험증서 제출

### ◇ KS인증 모듈 사용 태양광 사용 발전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인증을 획득한 모듈 사용 예정 사업자에 추천심사 시 가점

### ◇ 농촌·영농형 태양광 용자 추천 및 안내

(기존)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 (변경)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연락처 다음페이지 참조)

## 4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2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본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지역 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7	02)2071-3808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031)260-4639	031)260-4628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432-7034	032)432-7030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2, 8414, 8424	033)256-3914
세종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296-0363	043)296-0361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527-6953	042)523-344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212-7083	063)212-9082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2	062)223-2362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503-7741	051)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20	053)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212-1146 ~8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748-4695	064)747-2682

[붙임]

##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1. 개요

- (지원대상) 국내 중소기업
- (지원범위)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00호)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자금추천 심사 절차

-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8-01호)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3. 기타 준수사항

-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제2항에 따른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로 하며, 최종 자금 인출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말까지 임